#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2015. 1. 28(수), 14:00 ~

■ 장 소: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 석 자 : 김학범, 김 원, 류제헌, 박양우, 백인성, 이광춘,

이두표, 이은희, 이홍식, 전영우, 정종수, 황재하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주변"한우사"증축	공개		
2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시업	공개		
3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주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신축	공개		
4	「낙동강 하류철새도래지」주변 물양장 조성	공개		
5	「낙동강 하류철새도래지」내 사하구 상징조형물 설치	공개		
6	「낙동강 하류철새도래지」내 하구둑 경관조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공개		
7	「낙동강 히류 철새도래지」 내 하구둑 우인배수로 경관조명 허가시항 변경허가 신청	공개		
8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내 영농사업	공개		
9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갤러리 주택 신축	공개		
10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재해복구 및 소화시설 구축	공개		
1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신흥사 선체험관 건립	공개		
12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내 ***** 및 ** 설치	공개		
13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임포획 현무암 분포지」 내 *** **** 및 ** 설치	공개		
14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공개		
15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관음굴)」 출입 허가 신청	공개		
16	「예천 선몽대 일원」주변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	공개		
17	「밀양 월연대 일원」주변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	공개		
18	2015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 추진계획	공개		
【검토사항】				
19	「제주 방선문」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대책 검토	공개		
【보고사항】				
2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공개		

# 【심의사항】

천기 2015-01-01

# 1.「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주변 "한우사" 증축

#### 가. 제안사항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주변 "한우사" 증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 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주변 "한우사" 증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3호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 ㅇ 소재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금암리 일원,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원
  - ㅇ 지정일 : 2011. 09. 05.
- (3) 신청내용
  - 사업명 :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주변 "한우사" 증축
  - ㅇ 사업위치 : 충남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 ㅇ 사업목적 : "한우사" 증축
  - ㅇ 사업내용 : 톱밥 발효 한우사 증축
    - 신청면적 : 2,748.4m²(지목 : 답)
    - 건축면적 : 2.748.4m²
      - · 톱밥 발효 한우사 : 2.430 m²
    - · 퇴비사 : 318.40 m²
    - 층수 / 높이 : 1층 / 7.86m
    - 구조 / 지붕 : 일반 철골조 칼라강판·선라이트 / 박공지붕
    - 건폐율 : 56.62%(법정60%)
    - 용적율 : 56.62%(법정80%)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48.3m 이격
  - ※ 현상변경 허용기준상 제2구역으로 도시계획조례이나 공통사항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 시설은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라. 검토의견(\*\*\*\*\*)

○ 천연기념물 제533호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이나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48.3m 이격된 거리에 "톱밥 발효 한우사 증축"에 따른 미호종개 서식지의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 2015.1.16.)

#### <\*\*\* 문화재 전문위원>

# (1) 수질오염 문제

- 한우사는 대표적인 수질오염원임. 장마기나 우기에는 거의 방치되어 수로 로 축산오염물이 직접 유입되거나, 처리를 위한 퇴적물의 경우도 직접 하 천이나 수로로 유입되기 쉬움. 특히 현재처럼 원인행위자가 직접 하수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직접 처리하고자하는 의지가 없을 경우 이행되기 어 려움. 따라서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진 후에 허가가 가능함.
- 특히 본 조사지점의 경우 한우사 비점오염원발생이 수로를 타고 지천본류에 직접영향을 주고 있음. 현재 기존의 우사와 증축예정지의 우사의 앞에는 수로가 있으며 이 수로의 영향으로 현재도 지천과 연결되는 수문의 하부에서는 수질과 수색이 좋지 않은 상태임. 그로 인해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는 물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급종인 흰수마자도 주 서식지가 수문의 상부역에 집단 서식하고 있는 실정임. 향후 증축시에는 그 영향이 더커져서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는 물론 환경부 멸종위기 1급종인 흰수마자도 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 장기적으로는 기존 우사의 경우도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대상임

# (2) 민원허가사유 발생

이 지역은 농경지로서 만일 한 가구를 허가할 경우 인접한 다른 농가의 축산허가도 불허할 특별한 명분이 없어져 대량의 우사축조허가를 방조하는 결과를 유발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일대에 수질 및 악취오염의 커다란 원인으로 제공될 것이 우려됨.

# (3) 근접거리에 의한 경관문제

○ 천연기념물 핵심지역인접지역으로 약 400m의 거리에 있어 천연기념물의 특성상 심미적 및 경관적가치를 저해함.

#### (4) 악취문제

 한우사는 사육과 축양과정 중에 주변에 악취를 피우는 특성이 있음. 특히 여름철의 기류에 의한 저기압의 형성, 봄과 가을의 기온역전 현상에 의해 주변에 공기를 낮게 드리워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물론 천연기념 물을 지대를 문화나 생태관광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문화재적 가치를 훼손 할 수 있음.

# (5) 종합의견

- 미호종개는 한국의 고유종이며, 금강특산종이며, 천연기념물종이며, 환경부 지점 멸종위기 1급종 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금강의 일부지역에서만 확인되는 특별한 종으로 생태적인 집단군집을 이루고 있는 지역임.
- 본 지역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1급종인 흰수마자도 많은 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매우 특별한 지역임
- ㅇ 특히 본 천연기념물지역인 지천미호종개서식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연

적으로 보존이 잘 된 특별한 서식지임.

- 본 지역의 주변에는 부여백제문화단지가 있으며,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청양의 매우 훌륭한 숲과 자연을 갖추고 있음. 또한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가진 지역으로,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찾아 우사나 축사 등의 냄새를 피우는 시설보다는 친환경 농업 및 다양한 화원등 첨단적이고 아름다운 시설재배를 통해, 백제문화단지와 청양의 숲생태계, 백제보를 연결하는 생태와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 농업과 관리로 지역의 경제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천연기념물지역으로서 미호종개의 서식지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측면, 지리적 측면, 악취문제, 경관측면, 장기적인 지역경제성측면을 고려하여 한우사의 설치를 반대함

바. 의결사항: 보류

# 2.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시업

# 가. 제안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사항임.
- 2014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심의 결과, "문화재 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사유로 보류
  - 1차 검토회의 : '14.12.10 / 2차 검토회의 : '15.1.19
  - \* 검토위원 :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 위원), 사적분과 (\*\*\* 문화재 전문위원)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 ㅇ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 ㅇ 지 정 일 : 1966.7.13
- (3) 신청내용
  - ㅇ 사업명: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주변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대저2동 일원
  - ㅇ 사업내용
    - 사업면적: 11,885,910 m²
    - 현상변경 허가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 · 하천시설 10,786 m² (제방 5,320 m², 호안 4,185 m², 제방연결로 1,281 m²)
- ·교량 32.341 m²(12개소)
- · 공원 및 녹지 : 39.706m²(공원 및 녹지시설 설치)

#### <허용기준 1구역>

- · 도로 31.518㎡ (B26~40m)
- ·오수중계펌프장 1,011 m²

- · 하천시설 136,786㎡ (제방B5.0m, 63,201㎡, 호안 64,048㎡, 제방연결로 9,537㎡), 교량 11,418㎡(12개소)
- · 공원 및 녹지 1,008,694㎡ (완충저류시설 1,775㎡, 신설양수장 1,000㎡ 등) ※ <허용기준 2~5구역>
  - ·건축물은 허용기준 내 높이 및 제반사항 준수(지구단위계획상 해당 구역내 높이기준 제한)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외

# 라. 검토의견(\*\*\*\*\*)

- 2014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회의결과 보류된「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두 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철새도래지에 대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였음.
- 2차 검토회의 시 우리 청이 제시한 의견 반영 여부와 문화재구역을 통과하는 교량 및 공원 녹지시설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중 습지생태원은 철새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지역으로서 현재 계획 중인 핵심 보호지역이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 2구역으로 되어 있어 철새 도래지 보호를 위해서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마. 참고자료(1차 검토회의 의견 / 2014.12.10)

# < 수변 계획 >

- (\*\*\*, \*\*\*, \*\*\*)
  - 습지생태원 및 서낙동강 수변은 일반인의 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동선 조정을 검토할 것
- o (\*\*\*, \*\*\*)
  - 서낙동강 수변 관리동선 조명계획 시 조명관리프로그램(타이머 등) 설치 보다는 동작센서 적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 (\*\*\* 위워)

- 계획/설계 이후 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함

# < 교량 계획 >

- o (\*\*\*, \*\*\*)
  - 보행교 중심으로 탐조공간 등 휴식공간 성격의 쉼터 배치, 녹색공간 도입 등 검토 필요
- o (\*\*\*, \*\*\*)
  - 조류보호를 위해 교통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차량 속도 저감 방안 도입 필요
- o (\*\*\*. \*\*\*)
  - 조류 보호를 감안 세물머리변 보도교 필요성에 대해 추가 검토 요망

# 바. 참고자료(2차 검토회의 의견 / 2015.1.19)

#### < 수변 계획 >

- (\*\*\*, \*\*\*, \*\*\*, \*\*\*)
  - 서낙동강 수변은 녹지네트워크 결절점에 계획된 버퍼존(이용 확산 방지) 주변에 대하여
  - 이용관리를 위한 인제책(柵) 도입을 검토하고
  - 일반관리로 지역은 조명을 최소화하고, 버퍼존 중심으로 조명 필요성 검토
  - 습지생태원, 평강천~맥도강변 보완계획 : 의견 없음

#### < 교량 계획 >

- o (\*\*\*, \*\*\*, \*\*\*)
  - 세물머리변 보행교량 2개소에 대해 현 계획과 위치조정대안을 상호비교 검토할 것

#### 사. 의결사항: 보류

# 3.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주변 지역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주변 지역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ㅇ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남 진해시 및 김해시 일원
  - ㅇ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사업명: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 ㅇ 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번지
  - 사업목적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을 하기 위함.
  - ㅇ 사업내용
    - 규모 : 2동, 대지면적 1618㎡, 건축면적 및 연면적 610㎡, 건물 최고높이 7.55m 건폐율 37.70%, 용적율 37.70%, 조경면적 90㎡
      - 지붕 : THK175 준불연판넬. 사면 THK125 메탈판넬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 ※ 제1구역(기존 규모 재·축 허용) 및 제2구역(최고높이 11m, 3층이하) 일부포함

#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을 하고자 신축하는 사항이며, 신청 지와 문화재구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 의견 2015.1.22.)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1구역과 2구역에 걸쳐 건물 2동을 신축하는 건으로, 평강천(지정구역)에 도래하는 철새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및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보류

# 4.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주변 물양장 조성

#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물양장 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물양장 조성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ㅇ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남 진해시 및 김해시 일원
  - ㅇ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ㅇ 사업명: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물양장 조성
  - 사업위치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번지
  - ㅇ 사업목적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물양장 조성을 하기 위함.
  - ㅇ 사업내용
    - 규모 : 물양장 사용면적 1,672㎡, 방진벽 설치 160m\*4.9m\*0.3m, 세륜장 설치 4m\*8m\*1.5m. 세척조 설치 10m\*10m\*1.5m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내

#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문화재구역 내 물양장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철새 도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 의견 2015.1.22.)

○ 문화재 지정구역 내에 물양장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현재 본 사업장 주변에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물양장이 몇 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현장 및 주변 환경에 대하여 현지조사 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판단됨

#### 바. 의결사항: 보류

# 5.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사하구 상징조형물 설치

####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사하구 캐릭터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사하구 캐릭터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2014년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현지조사 후 재심의" 보류된 안건임(\* 현지조사: '15.1.8 / \*\*\*·\*\*\* 문화재위원)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부산시 사하구청장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ㅇ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남 진해시 및 김해시 일원
  - ㅇ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ㅇ 사업명: 사하구 캐릭터 상징조형물 설치
  - 사업위치 :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 \*\*\*\*\*\*

(낙동강하구둑 을숙도 문화회관 진입로 교통섬 일부)

- ㅇ 사업목적 : 사하구 캐릭터 상징조형물 설치를 하고자 함.
- ㅇ 사업내용
  - 상징조형물 설치

# 【당초 계획】

- 면 적: 23.5m²
- · 규 모: W=25.62m, H=5.85m
- 재 질:스테인레스스틸, 우레탄도장(무광)
- · 색 채 : 화이트(N9.5)

#### 【변경 계획】

- 면 적: 12m²
- · 구 모: W=11.25m, H=4.5m, D=400mm
- 재 질:스테인레스스틸,우레탄도장(무광)
- · 색 채 : 화이트(N9.5)
- 스토리텔링판 1개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을숙도 위를 통과하는 낙동강하구둑 도로에 사하구 캐릭터 상징조형물인 「고니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임. 당초, 조형물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계획을 변경하였고, 도로변 안으로 설치되 어 문화재 보존 및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5.1.8.)

- 본 사업은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언의 4차선도로변 교통섬에 사하구 상징의 대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임
- 1차 신청 내용에 비해 길이 25.62m→11.25m, 높이 5.85m→4.5m, 두께 0.5m →0.4m로 규모를 축소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시켰으며, 허용 기준 2구역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도로변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독특한 조형물로 자동차 운전자들의 시선을 끌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아 따라서 상징조형물의 설치위치를 재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 문화재위원 \*\*\*\* 의견 2015.1.8.)

- 상기 신청 건은 사하구의 상징 캐릭터인 고니의 조형물을 사하구 진입도로 변에 설치하여 차량이용자에게 사하구의 이미지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임
- 설치 대상 지역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으로, 조형물의 규모(높이)는 허용기준 내에 해당함
- 그러나 당초 계획된 조형물의 규모(길이25.62m, 높이 5.85m)가 과도하고 형태 또한 고니와는 이질감이 있어, 규모가 축소되고(길이 11.25m, 높이 4.5m) 형태 또한 고니에 가깝게 변경이 되었음
- 따라서 설치지역 주변(교통량이 많은 왕복 7차로 도로변)의 현재의 환경조 건을 고려할 때, 조형물 설치 자체에 의한 철새 서식에 미치는 영향의 변 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많은 양의 자동차가 고속으로 빈번히 통행하는 대로변에 대형 조형 물이 바로 접하여 설치됨은, 운전자의 주행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됨은 물론, 경관적으로도 압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상기 문제를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설치 위치를 도로변에서 도로 바깥쪽으로 일정 거리 이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6.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하구둑 경관조명 하거시항 변경하가 신청

####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하구둑 경관조명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하구둑 경관조명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해 신 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통합물관리센터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남 진해시 및 김해시 일원
  - ㅇ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ㅇ 사업명: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하구둑 경관조명 허가사항 변경
  - ㅇ 사업위치 : 낙동강하구둑
  - ㅇ 사업목적 : 하구둑 경관조명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 ㅇ 사업내용

# 【당초 허가내용】

	구 분	춘계·추계 (3~5월, 9~10월)	하계 (6~9월)	철새도래시기 (10~3월)
	1단계 (최소점등)	18:30	19:00	
점등 시간	2단계 (전체점등)	19:30~22:00	20:00~22:00	소등
	3단계 (최소점등)	22:00~23:00	22:00~23:00	(가로등, 난간 조명만 점등)
소등시간		23:00	23:00	
운영시간		4.5시간	4시간	

#### 【변경 허가신청】

- 변경내용 : 조명 설비 연중(1~12월, 18:30~23:00) 운영
- 허가기간 : 2011.10.28.~2020.12.31.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을숙도 위를 통과하는 낙동강하구둑위의 경 관조명을 당초, 철새도래시기인 10월~3월까지 소등을 전제로 춘계(3월~5월), 하 계(6월~9월)에 단계별 점등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하였음.
- 본 신청사업은 단계별 점등 허가사항을 연중(1월~12월, 18:30~23:00) 운영을 위해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연중 조명 점등으로 인한 철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 의견 2015.1.22.)

- 낙동강 하구둑 및 우안 배수로의 야간경관조명은 첨부된 전문가 의견과 같이 일부 철새들에게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야간 먹이활동에 도움이 되어 긍정적일 수도 있음
- 그러나 조명등은 야간에 먹이곤충을 유인하고 날씨가 궂은날 이동하는 조류를 유인하여 충돌사고를 유발시키며, 빛에 의해 물에 반사된 지형은 새들이 착각하여 내려앉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일반적으로 야간조명은 장기적으로는 조류의 바이오리듬을 변화시켜 일주 행동 뿐만 아니라 이동시기, 번식시기 등 동물계절학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음.
- 나동강 하구는 국내 최대의 철새성역(bird sanctuary)으로서 가급적 자연그 대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철새도래 및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 및 운영은 자제되어야 함
- ㅇ 따라서 경관조명은 당초 허가대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바. 의결사항: 부결

# 7.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내 하구둑 우안배수로 경관조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우안배수로 경관조명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우안배수로 경관조명 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통합물관리센터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ㅇ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남 진해시 및 김해시 일원
  - ㅇ 지정일 : 1966.7.23.
- (3) 신청내용
  - ㅇ 사업명: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 우안배수로 경관조명 허가사항 변경
  - ㅇ 사업위치 : 낙동강하구둑 우안배수로
  - ㅇ 사업목적 : 낙동강하구 우안배수로 경관조명 허가사항 변경
  - ㅇ 사업내용

#### 【당초 허가내용】

	구 분	춘계·추계 (3~5월, 9~10월)	하계 (6~9월)	철새도래시기 (10~3월)
	1단계 (최소점등)	18:30	19:00	
점등 시간	2단계 (전체점등)	19:30~22:00	20:00~22:00	소등
	3단계 (최소점등)	22:00~23:00	22:00~23:00	(가로등, 난간 조명만 점등)
소등시간		23:00	23:00	
운영시간		4.5시간	4시간	

#### 【변경 허가신청】

- 변경내용 : 조명 설비 연중(1~12월, 18:30~23:00) 운영

- 허가기간 : 2011.10.28.~2020.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동 사업은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을숙도 위를 통과하는 낙동강하구둑위의 경 관조명을 당초, 철새도래시기인 10월~3월가지 소등을 전제로 춘계(3월~5월), 하 계(6월~9월)에 단계별 점등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현상변경 허가를 하였음.
- 본 신청사업은 단계별 점등 허가사항을 연중(1월~12월, 18:30~23:00) 운영을 위해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연중 조명 점등으로 인한 철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 의견 2015.1.8.)

- 낙동강 하구둑 및 우안 배수로의 야간경관조명은 첨부된 전문가 의견과 같이 일부 철새들에게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야간 먹이활동에 도움이 되어 긍정적일 수도 있음
- 그러나 조명등은 야간에 먹이곤충을 유인하고 날씨가 궂은날 이동하는 조류를 유인하여 충돌사고를 유발시키며, 빛에 의해 물에 반사된 지형은 새들이 착각하여 내려앉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일반적으로 야간조명은 장기적으로는 조류의 바이오리듬을 변화시켜 일주 행동 뿐만 아니라 이동시기, 번식시기 등 동물계절학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음.
- 낙동강 하구는 국내 최대의 철새성역(bird sanctuary)으로서 가급적 자연그 대로 유지관리 되어야 하며 철새도래 및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 및 우영은 자제되어야 함
- ㅇ 따라서 경관조명은 당초 허가대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바. 의결사항: 부결

# 8.「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내 영농사업

# 가. 제안사항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내 영농사업(바이오씨감자 및 항암 무 재배)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내 영농사업(바이오씨감자 및 항암 무 재배)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산업개발(주)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ㅇ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 등.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등

ㅇ 지정일 : 1975. 2. 21

(3) 신청내용

ㅇ 사업명 :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내 영농사업(바이오씨감자 및 항암 무 재배)

ㅇ 사업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신촌동 \*\*\* 외8필지, 문발동 \*\*\*\* 외2필지

○ 사업목적 : 영농사업(바이오씨감자 및 항암 무 재배)을 위함.

ㅇ 사업내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²)	<b>신청면적(</b> m²)
문발동	****	하천	1,054,325	1,054,325
문발동	****	하천	382,668	382,668
문발동	****	하천	728,567	728,567
신촌동	****	하천	33,805	33,805
신촌동	****	하천	45,863	45,863
신촌동	****	하천	2,797	2,797
신촌동	****	하천	2,066	2,066
신촌동	****	하천	2,858	2,858
신촌동	****	하천	4,986	4,986
신촌동	****	하천	57,627	57,627
신촌동	****	하천	1,931	1,931
신촌동	****	하천	1,494,192	1,494,192
계			3,811,412	3,811,412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지정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신청부지는 문화재구역 내 영농사업인 바이오씨감자 및 항암 무 재배를 위해 현상변경 신청한 사업으로 한강하류와 바로 인접한 갈대로 이루어진 하천 부지로 재두루미 도래시 먹이터 및 쉼터의 공간으로 보존되어야 할 주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 / 2015.1.22)

- 본 신청건은 재두루미도래지 지정구역 내의 283만평에 갈대를 제거하고 밭 으로 개간하여 감자와 무를 재배하려는 것임
- 재두루미 도래지에서 넓은 면적의 갈대밭은 서식지 구성요소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밭으로 전환한다면 논과 달리 재두루미의 서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선상의 고양시 지역은 논으로 활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현지조사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바. 의결사항: 보류

# 9.「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갤러리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갤러리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 천연보호구역」주변 갤러리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일원
  - ㅇ 지 정 일 : 1966.10.12.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갤러리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번지
  - 사업내용 : 갤러리 주택 신축(지상2층, 연면적 183.07㎡, 건축면적 132.53㎡)
    - 갤러리 68.97㎡, 다가구 단독주택 114.1㎡, 철근콘크리트조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인접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제2구역으로 기존 건축물 범위 내 재·개축 가능

#### 라. 검토의견 (\*\*\*\*\*)

○ 동 사업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신례천 하류 인접지역에 갤러리주택을 신축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의결사항: 부결

# 10.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재해복구 및 소화시설 구축

#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재해복구 및 소화시설 구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오세암 재해복구 및 소화시설 구축을 위해 신청 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대한불교 조계종 오세암 주지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부
  - ㅇ 지 정 일 : 1965.11.5.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오세암 재해복구 및 소화시설 구축
  -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용대리 산\*\*)
  - ㅇ 사업내용
    - [재해복구-석축정비] (동자전 주변) 석축 해체·보수(32.5m), 계단 해체·보수, (동자전 전면) 계단 해체·보수 3개소, (해우소 법면) 반중력식 옹벽(H 4m) 및 돌망태 개비온옹벽(H 3m) 설치 10m, 법면부 면고르기 및 워터텍호안매트 140㎡
    - [소화시설] (지하저수조 설치/49.5m²) SMC물탱크(37.5t) 및 펌프실 설치, (옥외소화전) 호스릴소화전 3개소, 배관설치(식수용 70.2m, 소화용 244.5m) (광역피뢰침) 1개소 설치(OMMI ESE-120, 폴 15m, 보호반경 120m)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동 건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세암의 '14년 발생한 재해 복구와 소화 시설 구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현지조사 의견 / '15.1.20.)

<\*\*\*·\*\*\* 문화재위원, \*\*\* 토목전문가>

-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오세암의 2014년 발생한 재해복구와 화재대비 소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 저수조 설치 예정지 뒤편에 빗물을 분산 시킬 수 있도록 배수로를 설치하고, 지하저수조 상부는 굴착으로 발생하는 흙을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지형이 조성되도록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우소 측면 계곡부 법면 석축정비는 반중력식용벽 전면 돌망태 개비온용벽의 두께를 줄이고, 반중력식용벽과 돌망태 개비온용벽을 일체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바. 의결사항: 조건부 가결

# 11.「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신흥사 선체험관 건립

# 가. 제안사항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신흥사 선체험관 건립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신흥사 선체험관 건립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으로, '14년 제11차 및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4.11.20./'14.12.23.) 결과 사업시행에 따라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부결 되었던 사업에 대해 건립위치 변경 및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재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 일부

ㅇ 지 정 일 : 1965.11.5.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신흥사 선체험관 건립

ㅇ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산40번지 일원(내원암)

ㅇ 사업내용

구분	최초('14.11.20.)	2차('14.12.23.)	금회('15.1.28.)
법당(211.73m²) 철거		좌동	좌동
산신각(7.97 m²)	이설	좌동	존치
선실 신축	건축면적 149.76㎡,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 정면5칸, 측면3칸	좌동	건축면적 137.7㎡,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 정면5칸, 측면3칸
관리동 신축	건축면적 100.8㎡, 지상1층, 한식목구조, "一"자, 정면6칸, 측면2칸	좌동	건축면적 302.62㎡, 지하·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한식목구조, "-"자, 정면5칸, 측면2칸

구분	최초('14.11.20.)	2차('14.12.23.)	금회('15.1.28.)
선체험관 신축(1)	건축면적 100.8㎡, 지상1층, 한식목구조, "一"자, 정면6칸, 측면2칸	좌동	건축면적 100.8㎡, 지상1층, 한식목구조, "-"자, 정면6칸, 측면2칸
선체험관 신축(2)	건축면적 376.92㎡, 지하·지상1층, 한식목구조, "一"자, 정면5칸, 측면4칸	좌동	상동
한식막돌 담장 해체·설치	_	_	H 1.5m, L 33m
담장 설치	한식막돌, H1.5~2m, W0.6m, L147.8m	좌동	-
석축 신설	H1.5×L126.8m / H2×L129m / H4×L36.8m	좌동	H1~1.5×L10m/H1.5×L15m
진입로 신설	W1.5m, L44.1m	좌동	W2~3m, L70m
절·성토 (지하층 터파기 및 잔토처리)	450 m³	800 m³	(350 m³)
설치위치	법당철거 좌측부지	법당 철거부지	좌동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 라. 검토의견 (\*\*\*\*\*)

○ 동 건은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내원암 위치에 기존 법당을 철거하고 신흥사 선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형 변형 최소화를 위한 사업규모 축소 등을 통해 재신청한 것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가결

# 12.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내 \*\*\* \*\*\*\* 및 \*\* 설치

# 가. 제안사항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내 \*\*\*\*\*\*\* 및 \*\*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ㅇ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내 \*\*\*\*\*\*\* 및 \*\*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91호 「옹진 백령도 사곶 사빈」
  - ㅇ 소재지 : 인천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2번지 외
  - ㅇ 지정일 : 1997. 12. 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 산\*\*\*\*, 산\*\*\*\*
  - 사업목적 : \*\*\*\*을 통해 \*\*\*\*\* 효과적으로 \*\*\* \*\*\*\*\*\*\*\*\*\*
  - 사업내용 : 건물\*동. 연면적 \*\*\*\*\*m². 높이 \*\*\*m.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개동,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m 이격 \*개동, 159.3m(3구역) \*개동
  -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1구역: 원지형 보존(기존 규모 재.개축), 3구역(도시계획 조례)

# 라. 검토의견(\*\*\*\*\*)

○ 본 사업은 \*\* \*\*지역에서의 \*\* \*\*에 대비한 \*\*와 \*\*를 위한 시설 신축 건으로 상기 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곶 사빈의 해안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워>

- 이러한 시설들은 사빈과 사구 및 해안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철거되어야 할 시설들임
- 그러나 이 지역은 \*\*\*\*\*\*\*\*\*\*\*\*\* 지역이며, 신청한 시설은 기존의 \*\*\*\*\*에 설치되는 \*\*\*\*로써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 문화재위원>

- 백령도 사곶 사빈은 국내에서 유일한 견고한 해안사빈의 특성이 천연기념물적 가치를 가지는 곳임. 이러한 천연기념물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함
- 특히 해안에 인접한 \*\*\*\* 경우도 모두 옹벽 뒤에 설치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인력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자연유산의 보존 측면을 고려하여도 사안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 문화재위원>

- 상기 신청 건은 사곶 사빈 배후에 식생으로 피복되어 있는 얕은 사구지역에 해안을 따라 위치해 있는 \*\*\*\*\*\*\*\*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을 새로 이 구축하는 사업임
- 신축 대상지 중 1개소는 지정구역, 3개소는 1구역, 1개소는 3구역에 해당함으로, 대부분이 원지형 보존 지역에 해당함
- O \*\*\*\*\*\*\*\*에서의 \*\*\*\*\*\*에 대비한 효과적인 \*\*\*\*\*\*를 위해, 상기 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 높이를 가지는 건물 형태의 \*\*가 들어설 경우, 사곶 사빈의 해안경관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정구역과 1구역에 해당하는 \*\* 지점에서의 \*\*\*\*에 대해서는 이 지역 의 해안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바. 의결사항: 조건부 가결

# 13. 「옹진 백령도 진촌리 김림암포획 현무암분포지」 내 \*\*\*\*\*\*\* 및 \*\* 설치

# 가. 제안사항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 분포지」내 \*\*\*\*\* 및 \*\*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 분포지」내 \*\*\*\*\*\* 및 \*\* 설치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393호 「옹진 백령도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 분포지」
  - ㅇ 소재지 : 인천광역시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 154-2번지
  - ㅇ 지정일 : 1997. 12. 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
  - ㅇ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 \*\*\*\*\*\*번지
  - ㅇ 사업목적 : \*
  - 사업내용 : 건물\*동, 연면적 \*\*\*\*\*\*m², 최고높이 \*\*\*\*m.,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 라.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에서의 \*\*\*\*\*에 대비한 \*\*\*\*\*\* 위한 시설 신축 건으로 상기 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무암 분포지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 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 ㅇ 작은 언덕 위에는 \*\*가 있으며 주변에는 \*\*을 비롯하여 \*\*\*\*들이 있음
- 사업이 실시된다 하여도, 현재 나타나 있는 감람암 포획 현무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적겠지만, 터파기가 이루어진다면 지하의 현무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ㅇ 해안경관이 수려하지는 않지만 해안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임
- 그러나 해당지역이 \*\*\*\*임으로 \*\*\*\*\*에서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음
- 만약 사업이 시행되어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감람암 포획 현무암이 떨어져 나온다면 이들을 모두 수거하여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센터에 보관·전시·연구 토록 하거나, 백령도에 종합전시관이나 안내소, 방문객센터 등을 건설하여 전시자료로 이용토록 하여야 할 것임
- ㅇ \*\*\* 된다면 모든 \*\*\*\*\*\*하고 자연상태로 복원을 하여야 할 것임

#### <\*\*\* 문화재위원>

- 진촌리 감람암포획 현무암 분포지에 위치하는 신청 지역은 현재 \*\*\*\*이 위 치하고 있으며 그 후위에 \*\*\*\*\*\*\*로 \*\*\*에 위치하는 특성상 \*\*\*\*를 위하 여 필요한 시설임이 인정됨.
- 다만 본 천연기념물의 특성이 감람암을 포획하는 현무암이고 시설 부지 기반의 일부가 이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초 등 굴착공사에는 반드시 지질전문가의 입회가 필요하고, 공사 완료 후 자연유산의 훼손 정도에 따른 결과와 중요한 암석 시료는 수습하여 문화재청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재위원>

- 상기 신청 건은 감람암포획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해안절벽 위(지정구역)에 자리한 \*\*\*\* 주변에 \*층 규모(높이 \*\*\* m)의 건물 \*개동을 새로이 건축하 는 사업임
- \*\*\*\*\*에서의 \*\*\*\*에 대비한 효과적인 \*\*\*\*\* 위해, 상기 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길이 \*\*\* m의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터파기 등에 의해 보호 대상인 현무암이 훼손될 가능성이 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지역 지반을 이루고 있는 현무암에 대한 공사과정에서의 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바.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14.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 가. 제안사항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주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 ㅇ 소재지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산263-1일원
  - ㅇ 지정일 : 2001. 11. 30.
- (3) 신청내용
  - 사업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단독(다가구)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 \*\*\*\*\*\*
  - ㅇ 사업내용
    - 건축면적 : 237.60m² 연면적 : 524.71m²
      - · 지하1층 : 295.90(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 · 지상1층 : 228.81(단독주택 다가구 10가구)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최고높이 : 7.088m 경사지붕
- (4) 문화재와의 거리: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4.5m 이격
  - \* 현상변경허용기준 2구역 : 경사지붕 7.5m이하(1층 허용) 단, 건물용도는 주거용에 한함.

#### 라. 검토의겸(\*\*\*\*\*)

○ 동 사업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주택 신축건으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검토)

# <\*\*\* 문화재위원>

- 본 신청건은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2구역에 속하는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축 규모는 허용기준 내에 포함되고 있으나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 주택이 아니라 매점을 포함한 다가구주택을 조성하는 건임
- 따라서 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 천연기념물의 보존과 관리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15.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관음굴)」 출입 허가 신청

# 가. 제안사항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관음굴)」 출입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ㅇ「삼척 대이리 동굴지대(관음굴)」 출입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 ※ 참고사항

- '14.12. 26. 관음굴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신청 : (사)한국동굴학회
- '15. 1. 2 출입허가 신청 관련 사업계획서 등 보완 요청 : 천연기념물과
- '15. 1. 22 관음굴 출입허가 신청 관련 보완 서류 제출 : (사)한국동굴학회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사)한국동굴학회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78호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관음굴)
  - ㅇ 소 재 지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25 외
  - ㅇ 지 정 일 : 1966.06.14
- (3) 신청내용
  - ㅇ 출입기간 : 2015. 1.
  - ㅇ 출입구간 : 관음굴 내 기 확인된 조사 구간
  - ㅇ 출입인원 : 한국동굴학회장 \*\*\* 등 12명
  - ㅇ 출입목적 : 대이리 동굴지대의 대표적인 동굴인 관음굴의 자연환경 전반과

동굴내 수중탐사를 통하여 관음굴의 기초 환경 특성과 변화를

조사 분석

- ㅇ 조사 내용
  - 관음굴 주변 지표 환경 조사
  - 관음굴 내 지질, 지형, 수문, 동식물, 미기후, 스펠레오뎀 환경 조사
  - 관음굴 내 수중구간 탐사(관음굴에 대한 탐사 확인된 총 연장 1.2km)

# 라. 검토의견 (\*\*\*\*\*)

 관음굴은 우리나라 석회암 동굴 중에서 학술적 보존 가치가 가장 높고 전 구간이 항상 물이 흐르는 수로 구간으로 수심이 깊은 곳도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됨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검토)>

- 삼척시 대이리 동굴지대 내에 분포하는 관음굴은 동굴 전체를 따라 수로가 형성되어 있으며, 많은 동굴생성물이 분포하는 국내 최고의 학술적 가치를 가지는 석회동굴 중의 하나로 학계에서 평가되고 있다. 삼척시에서 1987년 과 2000년에 발간한관음굴 학술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동굴부근의 자연환 경, 동굴의 측량도, 동굴의형태 및 구조해석, 동굴환경, 동굴의 형성과정, 동굴생성물, 동굴 내 동물상 및 보전대책과 건의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 이번에 한국동굴학회에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조사범위는 모두 세가지로 제안되어 있으나, 이 조사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 1. 관음굴 주변 지표환경조사: 1987년과 2000년의 보고서에 의하면 관음굴 주변의 자연환경(식생, 지질 등)이 모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 조사를 신청한 신청자 중에는 지질을 전공하는 학자가 없으며, 식생조사는 겨울철에는 조사하기가 불가능하다.
- 2. 관음굴 내 지질, 지형, 수문, 동식물, 미기후, 스펠레오템 환경조사: 동굴 내에서 지질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관음굴 주변을 이루는 암석이 모두 조선 누층군 묘봉층과 대기층의 암석이나 이 암석은 모두 동굴 생성물에 의해 피복되어 관찰이 불가능하다. 동굴 내의 지형은 이미 2000년의 보고서에 충분히 기술되어 있다. 동굴 내 수문조사는 그목적이 불확실하다. 관음굴 내에는 이미수로를 따라 동굴수가 흐르고 있으며, 동굴 내의 수문학적인 분야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동굴수를 공급하는 외부의 환경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굴 내의 동식물조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동굴 내에는 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사를 신청한 의도가 불확실하며, 동굴 내 동식물은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 학자는 생물학자가 아니다. 동굴 내 미기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매우 장기간(수개월 이상)동안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동굴 내 스펠레오템 환경조사라는 용어는 성립할 수 없는 용어이다.

- 3. 동굴 내 수중구간 탐사: 관음굴은 동굴의 주 통로를 따라 수로가 발달하여 있으며 수중탐험을 할 수 있는 구간은 거의 제한적이다. 또한 수로를 따라서 탐사할 수있는 수중구간의 이미 조사된 구간 내에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신청서에서는 수중탐사장비를 사용하여 1.2km 구간 내에서 학술탐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구간에서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밝히기 위해 탐사한다는 목적이 이해하기 어렵다
- 따라서 신청서 상으로만 판단한다면 이 조사는 학술조사의 의미가 전혀 없는 조사라고 판단된다. 관음굴 내에서 학술조사를 수행하려면, 이미 조사가 되어 있는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고, 기 조사된 분야나 현상중에서 구체적으로 추가조사를 수행할 항목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음굴은 구간별로 매우 위험한 통로가 존재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조사팀이 관음굴을 조사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목적의 조사를 수행하는지를 뚜렷이 나열한 후 조사를 해야 하며, 감독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부결

# 16. 「예천 선몽대 일원」주변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

# 가. 제안사항

「예천 선몽대 일원」주변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위해 국가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예천 선몽대 일원」주변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사항으로 '14년 제10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예천 선몽대의 주요 경관을 이루는 내성천의 자연요소 훼손 우려가 있어 부결되었던 사업에 대해 교량 설치 및 생태하천 조성등을 제외하여 재신청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
  -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백송리 74번지 등
  - ㅇ 지 정 일 : 2006. 11. 16.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ㅇ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일원
  - ㅇ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국가하천인 내성천의 홍수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보호용 제방 설치, 비점오염원 제거, 선몽대에서 내성천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경관 조성용 수목식재 등 하천환경을 정비하고자 함

- 사업세부내용
- 1) 농경지 유실방지 제방설치(매트리스형돌망태 : L=527m) : 1구역
- 기존 저수호안의 포락 발생으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강성 호안공법을 적용함.
- 2) 경관용 관목 식재 : 2구역
- 예천선몽대 대안측 제방으로 식생매트 조성
- 완경사제방 : 848m, 식생매트 : 16,626 m²
- 식재 : 느티나무 4주, 조팝나무 190주, 찔레나무 3,890주, 달뿌리풀 : 21,380본
- 3) 비점오염원제거 : 1구역
- 산 책 로: 기존 습지를 보존하면서 기존동선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책로 정비 (경화마사토포장 : 2,786㎡)
-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는 공간에 달뿌리풀, 물억새 군락 조성 (표토제거 : 144,810㎡, SEEDING : 126,620㎡)
-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01.30까지
-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80m~1.04km 내외
  - ※ 현상변경 허용기준 1~2구역 해당

구분 (지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1구역	기존 규모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최고높이 8m 이하 (2층 허용)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허용)	<ul><li>지붕: 기와형태</li><li>건물: 무채색 계통</li></ul>
3구역	예천군 조례 등 관		

# 바. 검토의견 (\*\*\*\*\*)

○「예천 선몽대 일원」은 하천 앞에 넓게 펼쳐진 백사장과 숲이 어우려진 명승 경관으로 주변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4.10.13)

- 선몽대의 명승경관은 근래의 하천관련 사업으로 내성천의 하천환경이 크게 변화된 상황임. 특히, 내성천의 생명과도 같은 흰 모래벌이 급속히 유실되고, 다양한 초종과 목본류의 식생이 하천의 모래사장에 자라기 시작한 상태임.
- 내성천 호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국가지정 명승인 선몽대의 중요한 경관 요소를 이루는 내성천의 자연요소를 크게 훼손하는 사업으로, 선몽대의 명승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가결

## 17. 「밀양 월연대 일원」주변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가. 제안사항

「밀양 월연대 일원」주변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밀양 월연대 일원」주변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 참고 >
  - 2013.11.27 문화재위원회 심의 : 조건부 가결(용평지구)
    - ▶가결사항: 산책로설치 1,511m, 자전거길 7,510m, 교량 L=300)
    - ▶보류사항: 하천 준설 및 절토, 호안게비온 메트리스, 하천정비는 남기지구 정비시 종합검토
  - 2014.02.26. 문화재위원회 심의 : 조건부 가결(남기・용평・교동지구)
    - ▶ 가결사항 : 월연대 옆 퇴적토 준설(갈수기 수면하 50cm이상)
    - ▶ 보류사항 : 합동조사 후 재심의
  - 2014.04.25. 문화재위원회 심의 : 부결(용평지구)
    - ▶부결사항 : 용평지구 하천 준설 및 절토
  - 2014.12.23. 문화재위원회 심의 : 보류(현지조사후 심의)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87호 밀양 월연대 일원
  - ㅇ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용평동 2-1번지 등
  - ㅇ 지 정 일 : 2012.02.08.
- (3) 신청내용
  - ㅇ 사 업 명 :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 ㅇ 사업위치 : 경남 밀양시 활성동, 내일동 ~ 상남면 평촌리 일원

- ㅇ 사업내용
  - 밀양강 퇴적부의 하도정비를 통해 수위를 저감하여 활성1동마을, 교동 지구의 수해를 예방하고자 저수호안(좌안L=400m)의 퇴적토 절토 125,000㎡를 정비하고자함
- 사업기간: 2012.11.13.~2016.10.22.(1.440일)
- (4) 문화재와의 거리: 1구역(원지형보존)

<공통사항>

- o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ㅇ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 면적 330m²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
   (예: 지붕 색상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 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포함.
-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 라. 검토의견 (\*\*\*\*\*)

○ 「밀양 월연대 일원」주변 '밀양강 용평1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2013년 11월 처음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금회까지 총4회 신청된 건임 (1차) 용평지구의 교량과 산책로·자전거길설치 가결, 용평지구 하천정비는 남기지구 정비할 때 종합검토사유로 조건부 가결되었고, (2차) 남기지구 준설 가결, 용평지구 하천정비는 현지조사 후 재심으로 조건부가결, (3차) 용평지구 하천정비부결되었음. 금회 신청은 게비온매트리스 공법을 조경석, 하천석 활용방법으로 변경 신청하였으나 퇴적토 준설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마. 참고자료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5.1.22)

- o 월연대에서 조망되는 밀양강의 경관은 월연대의 명승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하천 경관은 자연스러운 형태를 유지해야 함. 그러나 홍수로 인한 밀양강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치수사업 또한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o 밀양강의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용평1지구 퇴적토의 준설은 자연스러운 하천 경관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함. 개비온 공법 적용구간을 가능한 축소하고 표 면을 친환경공법으로 조성하며, 가능한 준설사면이 자연스러운 경사를 유지하 도록 해야 할 것임.

####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2015.1.22)

o 월연대 피안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은 하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었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제거하고 하상을 복원하며, 그 과정에 하천 퇴적 사력의 일부를 준설하는 사업이다. 제시된 설계에 의하면 월연대에서 조망되는 피안경관은 상당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호안정비 과정에서 인공구조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호안 경사를 완경사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가능하면 복원된 하상의 수림지역 중 특히 폐기되는 도로 구역의 경우 주변 수림과 동일한 수림의 복원이 수반될 수 있다면 하천 복원으로 인한경관 개선효과가 크게 개선될 것을 본다. 이유는 수림지 후방에 신설될 둑과도로가 차폐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 홍익대교수 현지조사 의견 2015.1.22)

○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준설을 선정한 것은 경제적인 방안으로 간주할 수 있음. 그러나 월연정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준설 시 과도한 하천 확폭으로 인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심미적 차원의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제외지 정비가 필요함, 본 공사계획평면도 상에 제시된 하천석 등을 이용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나, 홍수시 유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 및 유지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단장천과 밀양천 합류 구간인 A 지역에서는 홍수시 단장천의 좌안 유입 유속 내지는 최대유속의 분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좌안측 소류력 재산정 후 경관석보다는 주변 현장친화적인 개비온 형태의 하천석에 대한 적합성 검토 및 복토를 통한 자연경관 조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함.

#### 바. 의결사항: 조건부 가결

## 18. 2015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 추진계획

#### 가. 제안사항

2015년도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한 국고보조사업(문화재보수정비, 세계 유산보존관리) 보수·정비 추진계획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5년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및 명승'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보수·정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하여 부의하는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 명승
- (3) 사업내용
  - ㅇ 사업대상 및 사업비 : 347건 44.163백만원(국비 29.919백만원)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 342건 36,610백만원(국비 24,632백만원)
      - ·천연기념물·명승 보수정비 : 181건 33.913백만원(국비 22.744백만원)
      - ·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 161건 2,697백만원(국비 1,888백만원)
    - 세계유산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 5건 7,553백만원(국비 5,287백만원) ※ 사업별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4) 사업 추진방법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설계검토 및 현장점검 등
  - ㅇ 지방자치단체 : 설계도서 작성 및 사업시행
  - ※ 중요사업은 개별사업 단위별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시행

#### 라. 의결사항: 가결

## 【검토사항】

천기 2015-01-19

## 19.「제주 방선문 정밀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대책」

#### 가. 제안사항

「제주 방선문 정밀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대책」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검토 신청한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ㅇ 최근 제주에서 잦은 낙석으로 인해 사고 발생
  - 산방산 진입로(7월,2회), 용두암(8월), 용머리 해안(11월)
- 방선문 계곡 암반에 절리 및 진행성 균열 발달로 낙석에 따른 재해 및 인명 피해 우려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바, 그 과정에서 계획된 문화재보호 및 안전 조치방안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의견을 용역 결과에 반영하고자 요청한 사항임

####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제주시장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92호 제주 방선문
  -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1907번지, 오라2동 3819-11
  - ㅇ 지 정 일 : 2013. 01. 04.
- (3) 신청내용
  - 사 업 명 : 제주 방선문 정밀안전진단 후 보수·보강 대책 검토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번지, 오라2동 \*\*\*\*\*
  - ㅇ 사업내용 :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전망데크 설치 및 석축 시공 등

#### 라. 검토의견 (\*\*\*\*\*)

○ 제주 방선문은 현재 낙석에 따른 재해 및 인명피해 위험으로 비공개되고 있는바,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대안검토가 되어 용역결과 후 예산반영 및 현상변경에 대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참고자료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의견 2015.1.16)

- "제주 방선문"은 방선문 바위와 함께 계곡의 암반, 수로 등의 경관요소들을 대 상으로 하여 지정된 명승으로 방선문 바위 주변은 물론 계곡부에 인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명승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됨.
- 이 위 사업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획안 중 전망대 데크설치 안을 바탕으로, 위험구간 진입을 통제하고 언덕부분으로 설치되어 있는 순환보도를 보완하여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바. 의결사항: 가결

## 【보고사항】

천기 2015-01-20

# 20.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46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201-2호 혹고니	○ 신청인 : 경북대 조류생태환경연구소장/경북 안동시 ○ 허가사항 : 소각 ○ 수량 : 5개체 ○ 사유 : 폐사에 따른 소각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7호 큰소쩍새	○ 신청인: 울산광역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장/울산 남구 ○ 허가사항: 소각 ○ 수량: 1개체 ○ 사유: 폐사에 따른 소각	<허가>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ul> <li>신청인: 창원시장/경남 창원시</li> <li>허가사항: 소각</li> <li>수량: 2개체</li> <li>사유: 폐사에 따른 소각</li> </ul>	<허가>
현상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02호 두루미	○ 신청인: 서울어린이대공원장/서울 광진구 ○ 허가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사육) ○ 수량: 1개체 ○ 사유: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육 기간 연장 신청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 신청인: 서울어린이대공원장/서울 광진구 ○ 허가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사육) ○ 수량: 1개체 ○ 사유: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육 기간 연장 신청	<허가>
	천연기념물 제201-2호 큰고니	<ul> <li>신청인: 서울어린이대공원장/서울 광진구</li> <li>허가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사육)</li> <li>수량: 1개체</li> <li>사유: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사육 기간 연장 신청</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경북 영천시 ○ 허가사항: 허가사항 변경허가(사육) ○ 수량: 7개체 ○ 사유: 개체수 변경으로 인한 변경 허가 신청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 신청인: 대전광역시도시공사 사장/대전 중구 ○ 허가사항: 사육 ○ 수량: 22개체 ○ 목적: 교육·전시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ul> <li>신청인: ***/강원도 춘천시</li> <li>허가사항: 사육</li> <li>수량: 6개체</li> <li>목적: 체험학습 및 생태교육</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453호 남생이	○ 신청인: 장수군수/전북 장수군 ○ 허가사항: 사육(천연기념물센터와 개체교류 조건) ○ 수량: 2개체 ○ 목적: 종 보존 및 인공증식, 교육·전시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 신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장/강원도 양양군 ○ 허가사항: 박제 ○ 수량: 1개체 ○ 목적: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	○ 신청인 : 한국산양보호협회장/강원도 양구군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1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 신청인 : 한국산양보호협회장/강원도 양구군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1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 신청인 : 한국산양보호협회장/강원도 양구군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2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	○ 신청인 : 한국산양보호협회장/강원도 양구군 ○ 허가사항 : 박제 ○ 수량 : 2개체 ○ 목적 :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3호 솔부엉이	<ul> <li>○ 신청인: 순천시장/전남 순천시</li> <li>○ 허가사항: 박제</li> <li>○ 수량: 1개체</li> <li>○ 목적: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24-4호 쇠부엉이	<ul> <li>○ 신청인 : 순천시장/전남 순천시</li> <li>○ 허가사항 : 박제</li> <li>○ 수량 : 1개체</li> <li>○ 목적 : 교육 · 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28호 하늘다람쥐	<ul> <li>신청인: 순천시장/전남 순천시</li> <li>허가사항: 박제</li> <li>수량: 1개체</li> <li>목적: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ul> <li>○ 신청인: 순천시장/전남 순천시</li> <li>○ 허가사항: 박제</li> <li>○ 수량: 1개체</li> <li>○ 목적: 교육·전시를 위한 표본 제작</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 신청인: ㈜**엔지니어링 ○ 허가사항: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의 부산에코델타시티 1단계 4공구 조성공사 지반조사 현상변경 허가 - 사업내용 •지질조사(시추) 11공(76mm) - 사업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 외10필지 ○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2015.3.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무태장어 서식지	<ul> <li>○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li> <li>○ 허가사항: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내 솜반천수해상습지 개선공사</li> <li>- 사업내용</li> <li>* 하천변 돌담쌓기: 면적 162㎡, L=54m</li> <li>* 기존도로정비</li> <li>· 판석포장(계단부): L=37.2m, B=1.5~2m</li> <li>· 판석포장(진입부): 면적 103.9㎡, B=2.0m</li> <li>· 판석포장(본선부): 면적 294.1㎡, B=1.5~2.0m</li> <li>· 불럭담쌓기: L=9.5m</li> <li>· 석축쌓기및휀스설치: L=30.1m</li> <li>-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332번지 22호 인근</li> <li>○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2015.5.30</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무태장어 서식지	<ul> <li>○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과)</li> <li>○ 허가사항: 「제주무태장어 서식지」내 서귀포 어항구 정비</li> <li>○ 사업내용</li> <li>- 물양장(TYPE-A) 신설: L=165.8m</li> <li>- 물양장(TYPE-B) 신설: L=98.8m</li> <li>- 서귀포항(내항) 준설: A=1,085.6㎡</li> <li>- 부대공 등: 1식</li> <li>-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596번지 2호</li> <li>○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2015.6.30</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422호 차귀도 천연보호구역	<ul> <li>○ 신 청 인: 제주특별자치도(해양개발과)</li> <li>○ 허가사항</li> <li>- 사 업 명: 고산항 파고라 설치</li> <li>- 사업위치: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8번지</li> <li>- 사업내용: 고사항 파고라 설치(7×3m) 2개</li> <li>○ 허가기간: 2014.12.29. ~ 2015.3.31.</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li>○ 신 청 인: ****(주)</li> <li>○ 허가사항</li> <li>- 사 업 명: 전기·통신시설 보강</li> <li>- 사업위치: 제주도 제주시 해안동 산220-13</li> <li>- 사업내용: 전기·통신시설 보강</li> <li>· CCTV 폴 보강 및 안테나 4기, 장비 2기 설치(4m²)</li> <li>· 전기·통신관로 설치: 지면노출, 길이 1,144m, 폭 20cm</li> <li>○ 허가조건: 전선·통신관 시설이 등산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기존 관로를 따라 설치하되, 전선관 시설 고정 시나무뿌리 등 기존 식생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li> <li>○ 허가기간: 2014.12.29. ~ 2015.12.31.</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li>○ 신 청 인 : 제주동부경찰서</li> <li>○ 허가사항</li> <li>- 사 업 명 : 이동식 무인부스 및 예고표지판 설치</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34</li> <li>- 사업내용 : 이동식 무인부스 및 예고표지판 설치(각 1개)</li> <li>· (설치위치) 5·16도로 성판교 북쪽 60m 지점, 남쪽 160m 지점</li> <li>○ 허가기간 : 2014.12.29. ~ 2015.3.31.</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li>○ 신 청 인: 제주서귀포경찰서</li> <li>○ 허가사항</li> <li>- 사 업 명: 이동식 무인부스 및 예고표지판 설치</li> <li>- 사업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산2-8</li> <li>- 사업내용: 이동식 무인부스 및 예고표지판 설치(각 1개)</li> <li>○ 허가기간: 2014.12.29. ~ 2015.3.31.</li> </ul>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ul> <li>○ 신 청 인 : 양평군수</li> <li>○ 허가사항</li> <li>- 사 업 명 : 은행나무 종자채취</li> <li>- 사업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625-1</li> <li>- 사업내용 : 은행나무 종자채취 2,000개</li> <li>○ 허가기간 : 2014.12.29. ~ 2015.3.31.</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60호 제주 산천단 곰솔 군	<ul> <li>○ 신 청 인 : 제주시장</li> <li>○ 허가사항</li> <li>- 사 업 명 :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li> <li>- 사업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아라일동 375-1 등</li> <li>- 사업내용 :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2건 9주)</li> <li>* 대상 : 제주 산천단 곰솔 군 8주, 제주 수산리 곰솔 1주</li> <li>○ 허가기간 : 2015.1.26. ~ 2015.2.28.</li> </ul>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ul> <li>○ 신 청 인: ***</li> <li>○ 허가사항</li> <li>- 사 업 명: 단독주택 신축</li> <li>- 사업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li> <li>- 사업내용: 단독주택 신축 및 조경사업</li> <li>·(단독주택) 지상2층, 높이 9.38m, 건축면적 165.35㎡, 연면적 216.28㎡, 철근콘크리트조</li> <li>·(조경사업) 1,781㎡, 제주 고유수종 식재, (잔디블럭 포장)</li> <li>○ 허가기간: 2014.12.31. ~ 2015.12.31.</li> </ul>	<허가>
	명승 제6호 울진 불영사 계곡 일원	<ul> <li>○ 신청인: 울진군청</li> <li>○ 허가사항: 사진찍기 좋은 명소 조성공사</li> <li>- 불영정: 불영정 밑에서 계곡을 바라보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장소 조성, 데크 계단 및 통행로 총길이 (L=43.6m, W 1.5~4m), 난간설치 * 불영정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는 18m</li> <li>- 선유정: 관람객 보호용 울타라(L=23.6m, H 1.2m), 벤취 6개 설치</li> <li>○ 허가기간: 2014.12.10~2015.05.31.</li> <li>○ 문화재와이격거리: 지정구역내</li> </ul>	<허가>
	명승 제62호 가야산 해인사 일원	<ul> <li>○ 신청인: 해인사</li> <li>○ 허가사항: 홍제암 경내지 지관대종사 탑비 신축</li> <li>- 사리탑 1기 화강석(2.6*2.6 H=3.5m)</li> <li>- 행적비 1기(2.3*2.0 H=3.3m)</li> <li>- 부대공사: 기단설치 L=29.8m, H=0.15m, 잔디식재 A=15㎡(평떼)</li> <li>○ 허가조건: 기존 승탑 및 탑비와 조화되도록 적정하게 축소하고 형태와 규모, 위치는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li> <li>○ 허가기간: 2014.12.24~2015.05.31.</li> <li>○ 문화재와이격거리: 지정구역내</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ul> <li>○ 신청인: ***</li> <li>○ 허가사항: 임업용 벌채 후 조림사업         <ul> <li>벌채면적: 0.57ha 벌채수량: 488주(39주 존치)</li> <li>리기다(299주), 참나무(157주), 활잡(32주)</li> <li>후계목 조림: 소나무식재</li> </ul> </li> <li>○ 허가조건         <ul> <li>공주 고마나루 일원은 송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존 소나무 4주는 존치하고, 후계목으로 소나무를 식재하여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후계목 소나무 식재 후 주변 수목에 피압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필요.</li> <li>허가기간: 2015.1.12.~2015.10.31</li> <li>문화재와이격거리: 지정구역내</li> </ul> </li> </ul>	<조건부 허가>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ul> <li>○ 신청인: *****</li> <li>○ 허가사항: **** 통신 중계시 전수식 설치</li> <li>- 핸드폰 통신 중계기 전주식 설치 (H=10m, 회색 전주 지름 20cm, ARM=50cm, 기초=0.8*0.6*0.6)</li> <li>○ 허가조건: ****통신사 이외 타통신사에서 공용으로 중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제공함</li> <li>○ 허가기간: 2015.1.21.~2015.04.30.</li> <li>○ 문화재와이격거리: 지정구역내</li> </ul>	<조건부 허가>
	명승 제19호 예천 선몽대 일원	<ul> <li>○ 신청인: ***</li> <li>○ 허가사항: 농작물(블루베리) 경작지 조성사업</li> <li>- 농지조성: 기존 지반이 움푹 패어 있어 H=1.5m~1.9m, V=15,628m³ 로 성토하여 지반을 평평하게 함</li> <li>- 벌목: 농지 내 잡목3주, 플라타너스(H=5~7m W=20~35cm) 11주 벌채</li> <li>- 블루베리 재배지: 2,500주 식재</li> <li>○ 허가기간: 2015.1.26~2015.10.31.</li> <li>○ 문화재와이격거리: 2구역</li> </ul>	<조건부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신두리 해안사구	<ul> <li>○ 신청인: 태안군수</li> <li>○ 사업위치: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 외 5필지</li> <li>○ 사업내용: 신두리 해안사구 복원 사업</li> <li>- 해안사구 전(前) 사구 복원: 2.5ha</li> <li>- 해안사구 기 복원지역 외래식물 제거: 약6.2ha</li> <li>- 해안사구 내 육지식물 간벌(솎아베기): 6.3ha</li> <li>(평균경급 14cm 이내 수목간벌)</li> <li>○ 허가조건</li> <li>- 사구의 이동과 사구 생태계, 경관 변화 등에 대하여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관계전문가 참여 자문)하여 우리 청에 보고</li> <li>- 사업추진시 지형 및 식생 관계전문가 자문 및 입회하에 시행</li> <li>○ 허가기간: 2015-1-5로 부터 2016-12-31</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67호 제주 수산동굴	<ul> <li>○ 시기가는 : 2016 1 3도 부가 2016 12 31</li> <li>○ 신청인 : ***</li> <li>○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번지</li> <li>○ 사업내용 : 임야개간</li> <li>- 면적 4,500㎡(임야 개간 후 농작물 재배)</li> <li>○ 허가조건</li> <li>- 개간 중 암반이 나와도 암반을 파괴하거나 제거 하지 말 것.</li> <li>- 가능한 과도한 비료나 농약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 적인 유기농 농법을 권장.</li> <li>○ 허가기간 : 2015. 1. 6~2015. 3. 31</li> </ul>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88호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제374호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제420호 성산포 천연보호구역	○ 신 청 인 :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번지 일원,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번지 일원,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번지외 19필지  ○ 사업내용 :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번지 일원 : 19ha  -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산**번지 일원 : 10ha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 **번지 일원 : 1ha  ○ 허가기간 : 2015-01-14로 부터 2015-03-31	<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 신 청 인 : 주식회사 ****         ○ 허가사항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         - 사업위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         - 사업내용 : 관광호텔 신축         ○ 허가기간 : 2014.5.7. ~ 2015.5.31.         <변경 허가사항> 사업규모 및 용도 변경         사업내용 당초 변경         지하1층, 지상5층, 22.1m(최고높이 24.5m)       20.08m(최고높이 24.4m)         규 모 건축면적 1,919.5㎡ 연면적 2,084.37㎡ 연면적 9,578.05㎡ 연면적 10,842.29㎡ 2.29㎡ 2.23리트 구조       의반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허가 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420호 성산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ul> <li>○ 신 청 인: ***</li> <li>○ 허가사항</li> <li>- 사 업 명: 건물 증축</li> <li>- 사업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일출로 ****(성산읍)</li> <li>- 사업내용: 건물증축(1층 건물)</li> <li>&lt;변경 허가사항&gt; 사업규모 변경 및 허가기간 연장</li> <li>사업내용 당초 변경</li> <li>규 모 건축면적 32.1㎡ 증축 건축면적 29.16㎡ 증축 (52.89㎡ → 85.2㎡)</li> <li>허가기간 2014.11.3.~2014.12.31. 2014.11.3.~2015.5.31.</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112호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ul> <li>○ 신 청 인 : 영광군</li> <li>○ 허가사항</li> <li>- 사 업 명 : 불갑사 수도암 인법당 증축</li> <li>-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li> <li>- 사업내용 : 불갑사 수도암 인법당 증축         <ul> <li>(1층 164.7㎡, 한식 맞배지붕)</li> </ul> </li> <li>&lt;변경 허가사항&gt; 허가기간 연장</li> <li>○ (당초) 2012.12.24.~2014.12.31. → (변경) 2012.12.24.~2015.8.31.</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천연기념물 제170호 홍도 천연보호구역	<ul> <li>○ 신 청 인: 신안군수</li> <li>○ 허가사항</li> <li>- 사 업 명: 상수도시설 공사</li> <li>- 사업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1구, 홍도2구 일원</li> <li>- 사업내용</li> <li>&lt;홍도1구&gt;</li> <li>· 수원시설: 암반관정(1,000㎡/일, 1개소)</li> <li>· 정수시설: 해수담수화시설(V = 500㎡, 1개소)</li> <li>* 가로18m*세로18m*높이6.5m/시멘트벽돌/아스팔트 싱글</li> <li>· 배수지시설: STS물탱크(V = 600㎡, 1개소)</li> <li>· 관로공사: 내충격수도관(D = 100~16mm, L = 4,881m</li> <li>· 가정급수: 내충격수도관(D 16mm, 129가구)</li> <li>&lt;홍도2구&gt;</li> <li>· 수원시설: 암반관정(300㎡/일)</li> <li>* 가로9m*세로8m*높이5.6m/조립식 판넬</li> <li>· 배수지시설: STS물탱크(V = 50㎡, 6*6*3.1m)</li> <li>· 관로공사: 내충격수도관(D = 50~16mm, L = 1,721m</li> <li>· 가정급수: 내충격수도관(D 16mm, 56가구)</li> <li>※ 관로 매설후 화강석 및 황토콘크리트 포장 시행</li> <li>&lt;변경 허가사항&gt; 허가기간 연장</li> <li>○ (당초) 2010.4.29.~2014.12.31. → (변경) 2010.4.29.~2015.12.31.</li> </ul>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	<ul> <li>○ 신 청 인: 한국전력공사</li> <li>○ 허가사항</li> <li>- 사 업 명: 전력공급시스템 설치</li> <li>- 사업위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li> <li>- 사업내용</li> <li>· 태양광 발전 설치(16.8kWp): 태양광 판넬 설치(84장, 126㎡)</li> <li>*설치위치: 경비대 앞 축대, 삭도건물 앞 축대, 삭도건물 벽면, 태양광구조물 앞면</li> <li>· 전력저장장치 교체: 리튬이온(1MWh)</li> <li>&lt;변경 허가사항&gt; 허가기간 연장</li> <li>○ (당초) 2014.7.31.~2014.12.31. → (변경) 2014.7.31.~2015.12.31.</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ul> <li>○ 신청인: 공주시장</li> <li>○ 허가사항: 공주 고마나루 주변 백제문화 체험장 신축</li> <li>○ 변경허가내용: 허가기간 변경</li> <li>(당초) 2014.8.4~2014.12.31. → (변경) 2014.08.14~2015.12.31</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고
	명승 제63호 부여 구드레 일원	<ul> <li>○ 신청인: 부여군수</li> <li>○ 허가사항: 역사마을 쉼터 포장 및 정원조성</li> <li>○ 변경허가내용: 허가기간 변경</li> <li>(당초) 2014.8.25~2014.12.31. → (변경) 2014.08.25~2016.12.31</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명승 제70호 춘천 청평사 고려선원	<ul> <li>○ 신청인: ***</li> <li>○ 허가사항: 고려선원 내 붕괴위험 해탈문,적멸보궁 철거</li> <li>○ 변경허가내용: 허가기간 변경</li> <li>(당초) 2013.4.25~2014.12.31. → (변경) 2013.04.25~2015.12.31</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534호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ul> <li>&lt;기 허가내용&gt;</li> <li>○ 신 청 인 : **개발공사</li> <li>○ 허가사항 : 절토면 보호공사 1식</li> <li>- L=174, H=18m</li> <li>○ 허가기간 : 2014. 6. 2 ~ 2014.12.31</li> <li>○ 허가조건 : 절토면 보호시설의 공법선정, 설계 및 시공 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할 것.</li> <li>&lt;변경 허가사항&gt;</li> <li>○ 허가기간 연장 : (당초) 2014.06.02~2014.12.31 → (변경) 2014.06.02~2015.3.31.</li> <li>○ 허가조건 : 기 허가조건 준수</li> <li>- 불허사유 : 층고 변동에 따른 구조적 안전 및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 우려</li> </ul>	<허가사항 변경허가>

나. 의결사항 : 접수